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17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의원발의】

검 토 보 고 서

2026. 1.

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2. 5.
경제도시위원회

1. 검토과정

○ **안 건 명**: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**발 의 자**: 이진환 의원 등 5명(손범구, 남현주, 박왕규, 고명욱)

○ **발의일자**: 2026. 1. 22.

○ **회부일자**: 2026. 1. 22.

○ **검토기간**: 2026. 1. 22. ~ 1. 28.

2. 제안이유

○ 자율방범대가 사용·활동하는 방범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추가하고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자율방범대가 사용·활동하는 방범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추가(안 제2조)

○ 자율방범대가 사용·활동하는 방범초소의 점용료 산정기준 규정(안 제3조)

4. 참고사항

○ 개정 조례안: 붙임

○ 관계법령

- 「도로법」 제61조,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, 제69조
-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

○ 비용추계: 비대상

○ 입법예고(2026. 1. 22. ~ 2. 1.)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활동의 지속적인 지원 기반이 되는 도로상 불법 시설물인 방범초소를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

○ 자율방범대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며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2023. 4. 27. 시행)에 따라 자율방범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.

○ 안 제2조에서는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의 종류 외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사용·활동하는 방범초소를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로 추가하여 도로점용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고,

○ 안 제3조에서는 해당 방범초소를 기존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과 동일하게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.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 설치와 관련한 도로점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법령과 저촉은 없으나, 도로점용 허가 시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>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사용·활동하는 방범초소

제3조제2호 중 “제2조제2호 및 제3호”를 “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”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도로점용허가) 공작물・물건, 그 밖의 시설물로서 「도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5조제1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도로점용허가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사용·활동하는 방범초소
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제2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 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의 제11호 그 밖의 것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.	2.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-- ---------- ---------- --.

【 관계법령】

□ 도로법

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 ① 공작물・물건, 그 밖의 시설을 신설・개축・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(도로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(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하려는 때에도 같다.

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1항제1호・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・유치원・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1. 학교: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
2. 유치원: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
3. 어린이집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

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・물건,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(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,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)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,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6조(점용료의 징수 등)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
2.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
3.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(이하 “점용료”라 한다)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「부동산등기법」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「건축법」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.

④ 점용료의 산정기준,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(제23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. 다만,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.

□ 도로법 시행령

제55조(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)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(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)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·물건,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봇대・전선, 공중선, 가로등, 변압탑, 지중배전용기기함, 무선전화기지국,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,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, 교통량검지기, 주차측정기, 전기자동차 충전시설, 태양광발전시설, 태양열발전시설, 풍력발전시설, 우체통, 소화전, 모래함, 제설용구함, 공중전화, 송전탑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2. 수도관・하수도관・가스관・송유관・전기관・전기통신관・송열관・농업용수관・작업구(맨홀)・전력구・통신구・공동구・배수시설・수질자동측정시설・지중정착장치(어스앵커)・암거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3. 주유소・수소자동차 충전시설・주차장・여객자동차터미널・화물터미널・자동차수리소・승강대・화물적치장・휴게소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
4. 철도・궤도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5. 지하상가・지하실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・통로・육교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6. 간판(돌출간판을 포함한다), 표지, 깃대, 현수막,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. 다만,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・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
7. 버스표판매대・구두수선대・노점・자동판매기・현금자동입출금기・상품진열대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8. 공사용 판자벽・발판・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
9.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・점포・창고・자동차주차장・광장・공원, 체육시설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(유류・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・점포・창고 등은 제외한다)
10. 「장애인・노인・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11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・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

12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·물건(식물을 포함한다)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

제69조(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)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(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8항에서 같다)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(이하 "점용료"라 한다)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.

□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자율방범대"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2. "자율방범대원"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
3. "자율방범대장"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.

□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)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(이하 "자율방범활동"이라 한다)을 위한 복장·장비·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·보수비
2.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·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(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) 및 운영비
3.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·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
4. 그 밖에 경찰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